

■ 최신 판례 ■

계약직으로 2년 이상 근무해 온 아나운서들에게 계약 만료를 통보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사례

[대상판결 : 서울행정법원 2019. 7. 4. 선고 2018구합74686 판결]

이광선 변호사 | 신혜주 변호사

방송사가 계약직으로 2년 이상 근무해 온 아나운서들에게 계약 만료를 통보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서울행정법원 판결입니다.

A 방송사는 2012년 4월에 B 씨 등 프리랜서 아나운서를 채용하였습니다. A 방송사와 B 씨는 2012년 4월부터 2013년 4월까지 프리랜서 업무위임계약을 체결했고, 이후 반복적인 갱신을 통해 2017년 12월 31일까지 계약 기간이 갱신되었습니다. 그런데 A 방송사는 2017년 12월 31일에 B 씨에게 계약 만료를 통보하였습니다. 이에 B 씨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고,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가 B 씨의 구제신청을 인용하자 A 방송사는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.

이 사건의 쟁점은 B 씨가 A 방송사의 근로자인지 여부였습니다.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근거로 B 씨는 임금을 목적으로 A 방송사에게 종속적인 지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.

- 1) A 방송사는 퇴사하는 직원을 위한 감사패를 제작하면서 B 씨로 하여금 그 도안과 문구를 검토하게 하는 등 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점 등을 비추어 보았을 때, A 방송사는 이 사건 계약 기간 동안 B 씨의 업무 내용을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그 업무 수행에 관하였다.

- 2) B 씨는 A 방송사가 제작하는 방송 프로그램에만 출연하여야 하므로 B 씨와 A 방송사의 관계는 전속적이고 배타적이었다.
- 3) A 방송사는 이 사건 계약 기간 동안 B 씨에게 고정적인 사무공간과 개인 사물함 등 편의 시설을 제공하였고, 다른 직원들이 근무하는 장소가 위 사무공간과 구분되지 않았다.
- 4) A 방송사는 이 사건 업무위임계약에서 B 씨에게 일정금액의 고정된 급여를 지급하기로 하였고, 이는 B 씨가 받은 급여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추단하는 강력한 근거가 된다.
- 5) B 씨는 A 방송사로부터 연 15일의 휴가를 보장받고, A 방송사는 B 씨가 휴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대직자를 결정하여 담당 부장에게 보고하고 그로부터 허락을 받도록 정하였던 것으로 보인다.

나아가 법원은 A 방송사가 2년을 초과하여 B 씨를 사용하였으므로 B 씨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하고, 계약기간 만료는 정당한 이유가 되지 아니하므로 B 씨에 대한 계약 만료 통보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.